

【서지사항】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방소윤
【특허고객번호】	4-2019-004658-8
【출원인】	
【성명】	임창섭
【특허고객번호】	4-2019-004662-7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 신태양
【대리인번호】	9-2011-100101-7
【지정된변리사】	백승준
【발명의 국문명칭】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System for Providing Service of Making Digital Asset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발명자】	
【성명】	방소윤
【특허고객번호】	4-2019-004658-8
【발명자】	
【성명】	임창섭
【특허고객번호】	4-2019-004662-7

【출원언어】 국어
【심사청구】 청구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특허법인 신태양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출원료】	0 면	46,000 원
【가산출원료】	40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12 항	671,000 원
【합계】		717,000 원
【감면사유】	개인(70%감면)[2]	
【감면후 수수료】	215,100 원	
【첨부서류】	1.기타첨부서류_1통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System for Providing Service of Making Digital Asset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 및 판매하여 자산 유동화를 확보하려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3】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전자화폐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로는 2009년 나카모토사토시(Satoshi Nakamoto)가 만든 비트 코인이 있다. 암호화폐 중 비트 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 코인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알트 코인에는 '이더리움',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0005】 이와 같이 종래에는 거래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알트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지만 코인의 큰 가격 변동성 때문에 코인을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0007】 또한,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암호화폐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시세 변동에 따라 정확한 금액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0009】 아울러, 암호화폐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발행하게 된다. 즉,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0011】 하지만 이러한 ICO는 벤처 투자와는 달리 일반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참여자가 피해를 보기 쉬우며, 코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을 보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0013】 따라서, 특허문헌 1 내지 5와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안을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특허출원되고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15】 (특허문헌 0001)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8-0101355호 (2018.09.12. 공개) 블록체인 자산의 거래소에 있어서 보안을 개선하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문헌 0002)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8-0114939호(2018.10.19. 공개) 블록 체인을 통해 자산 관련 활동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문헌 0003)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974075호(2019.04.24. 등록) 분산 해시 테이블과 피어투피어 분산 원장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특허문헌 0004)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0-2019-0006506호(2019.01.18. 공개) 디지털 자산 모델링

(특허문헌 0005) 한국등록특허공보 제10-1914668호(2018.10.29. 공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원금보장 자산이동 서비스 시스템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6】 본 발명의 실시예는 가령 부동산이나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 및 판매하여 자산 유동화를 확보하려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8】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은, 기업 또는 개인의 실물 자산(real asset)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코인(coin)으로 발행하고, 상기 발행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에 따라 코인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상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node)와 연동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0020】 상기 제어부는, 복수의 외부장치와 각각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발행한 코인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자산관리기관,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기관과 자산관리계약, 자산보관계약 및 사무수탁계약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

【0022】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개인 또는 기업의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로서 변환할 자산, 희망가치액, 토큰당 가격, 토큰명 및 발행기관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0024】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변환할 자산으로서 개인의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0026】 상기 제어부는, 상기 코인 발생시 상기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변환할 자산 중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현금 또는 신용 담보력 내에서 상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0028】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회계정보를 거래장부의 형태로 생성해 상기 코인의 소유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0030】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 방법은, 통신 인터페이스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의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에서 수신하는 단

계, 및 상기 제어부가, 상기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고, 상기 발행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에 따라 코인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상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와 연동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32】 상기 구동방법은, 복수의 외부장치와 각각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발행한 코인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자산관리기관,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기관과 자산관리계약, 자산보관계약 및 사무수탁계약을 각각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34】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개인 또는 기업의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로서 변환할 자산, 희망가치액, 토큰당 가격, 토큰명 및 발행기관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0036】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변환할 자산으로서 개인의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0038】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코인 발생시 상기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변환할 자산 중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현금 또는 신용 담보력 내에서 상기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0040】 상기 구동방법은, 상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회계정보를 거래장부의 형태로 생성해 상기 코인의 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42】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업자산의 디지털화로 분할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서 분할매매 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0044】 예를 들어, 매매가 쉽지 않은 부동산이나 그림이나 상표권 등 무형 자산들은 분할매매가 불가능하고 참여하기에는 그 단위가 일반인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종래 거래가 어려웠고 잘 팔리지 않는 토지나 무형자산 등에 대하여도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 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6】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 내지 도 4는 도 1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시스템의 서비스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1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한 블록다이어그램,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의 구동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7】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49】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2 내지 도 4는 도 1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시스템의 서비스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0051】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시스템(90)은 제1 단말장치(100), 제2 단말장치(110), 통신망(120),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 평가기관장치(140) 및 거래소장치(15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금융기관장치 등의 복수의 외부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53】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평가기관장치(140)나 거래소장치(15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시스템(90)이 구성되거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의 일부 또는 전부가 통신망(120)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장치(예: 무선교환장치 등)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0055】 제1 단말장치(100)는 가령 실물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또는 기업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물론 단말장치로는 데스크탑컴퓨터, 랩탑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TV, 국내 S사의 갤럭시기어와 같은 웨어러블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장치들과 연동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의 주변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무형자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57】 제1 사용자 즉 디지털자산의 발행자는 제1 단말장치(100)를 통해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에 접속하여 제공한다. 도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사용자는 서비스에 접속한 후 디지털화폐 즉 코인의 발행을 요청할 때,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환할 자산이 무엇인지, 또 희망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원하는 1개 토큰당 가격(가령, 이는 토큰의 총 발행 개수에 관계됨), 토큰명,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간단하게 디앱(Dapp) 방식으로, 즉 분산 어플리케이션(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을 통해 '디지털자산발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 자산들을 자동으로 디지털화하는 솔루션이 제공된다. 또한, 단순 블록체인 디지털화가 아닌 P2P(Peer to Peer) 매매시스템 및 거래소 상장까지 통합 솔루션이 공급되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통 기업도 쉽게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0059】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코인,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토큰은 동일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코인은 가상화폐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토큰은 거래 개념을 더 포함하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은 다양하므로 시스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화폐 혹은 코인을 해피코인이라 명명한다. 더 정확히 말해 "해피코인"은 실물자산을 안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자산화하여 매매, 거래증명, 증식형 배당 등을 구현해 낸 코인이다.

【0061】 예를 들어, 제1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자산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보유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특정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좀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부동산을 디지털자산화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종래 무형자산을 취급하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자산의 일부로서 쉽게 무형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자산화함으로써 그 범위가 국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미치며, 한국이 아닌 전 세계에 해당 자산의 매각이 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자산 유동화가 가능하게 된다. 종래 기업들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중개인에게 맡기거나 직접 매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매매, 부동산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해 왔던 것에 비해 매우 편리하다.

【0063】 제2 단말장치(110)는 디지털화된 자산을 거래소장치(150)를 통해 구매하는 사용자 즉 미래의 코인 소유자들의 단말장치에 해당된다. 마치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제2 단말장치(110)는 가령 특정 개인이 부동산을 디지털자산화한 경우, 기존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 공동 투자하여 공유하는 형태를 갖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공유 지분을 갖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의 부동산에 대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지분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0065】 제2 단말장치(110)는 제1 단말장치(100)와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컴퓨터, 랩탑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장치를 포함한다. 디지털자산화 서비스장치(130)를 통해 발행된 코인은 거래소장치(150)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제2 단말장치(110)는 거래소장치(150)에 접속하여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가령, 회사의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은 사업 확장시마다 기업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한 개의 디지털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이에 비례해 갈수록 늘어나는 증식형 배당을 받을 수 있다.

【0067】 또한, 제2 단말장치(110)는 가령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로 공공거래장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한 회계구조를 갖게 되어 회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 자산 변동과 이에 따른 코인 발행 이슈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안전하게 자산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0069】 통신망(120)은 유무선 통신망을 모두 포함한다. 가령 통신망(120)으로서 유무선 인터넷망이 이용되거나 연동될 수 있다. 여기서 유선망은 케이블망이나 공중 전화망(PSTN)과 같은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선 통신망은 CDMA, WCDMA, GSM, EPC(Evolved Packet Core), LTE(Long Term Evolution), 와이브로

(Wibro) 망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망(120)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구현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접속망으로서 가령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의 클라우드 컴퓨팅망, 5G망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가령, 통신망(120)이 유선 통신망인 경우 통신망(120) 내의 액세스포인트는 전화국의 교환국 등에 접속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망인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SGSN 또는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BTS(Base Station Transmission), NodeB, e-NodeB 등의 다양한 중계기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0071】 통신망(120)은 액세스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액세스포인트는 건물 내에 많이 설치되는 펌토(femto) 또는 피코(pico) 기지국과 같은 소형 기지국을 포함한다. 펌토 또는 피코 기지국은 소형 기지국의 분류상 제1 단말장치(100) 및 제2 단말장치(110) 등을 최대 몇 대까지 접속할 수 있는냐에 따라 구분된다. 물론 액세스포인트는 제1 단말장치(100) 및 제2 단말장치(110) 중 적어도 하나의 장치와 지그비 및 와이파이 등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무선통신을 위하여 TCP/IP 혹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은 와이파이 이외에 블루투스, 지그비, 적외선, UHF(Ultra High Frequency) 및 VHF(Very High Frequency)와 같은 RF(Radio Frequency) 및 초광대역 통신(UWB) 등의 다양한 규격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세스포인트는 데이터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위치에 대한 최상의 통신 경로를 지정하며, 지정된 통신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 예컨대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로 전달할 수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회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예컨대 라우터(router), 리피터(repeater) 및 중계기 등이 포함된다.

【0073】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블록체인을 통한 기업자산의 디지털화를 수행하며, 블록체인을 통한 기업자산과 디지털자산과의 만남을 갖도록 동작한다. 즉 후자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토큰(혹은 일괄수주계약) 방식이 아닌 분산된 디지털자산 관리방식을 사용한다. 즉 기존 기업자산의 참여방식은 토큰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분할매매도 가능하였지만 그림이나 상표권 등 무형자산들은 분할매매가 불가능하고 참여하기에는 그 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도 2는 기업자산을 블록체인 디지털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도 3 및 도 4는 신탁방식을 활용한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교환을 보여주면, 도 4는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0075】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제1 단말장치(100)를 사용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관계자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해피티콘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디지털 자산화를 요청하면, 수신된 자산에 관련된 정보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코인을 즉시 발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장치

(140)로부터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평가기관장치(140)로부터 제공받아 DB(130a)에 저장한 후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물론, 평가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디지털자산화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정보가 입력될 때, 이를 근거로 해당 자산의 평가를 평가기관장치(140)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0077】 원론부터 말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즉 솔루션은 기업 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권위있는 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자산평가를 받아 일정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회계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을 기하며, 기업의 수익 배당을 디지털 자산 소유자 모두에게 확대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도 배당(POS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명으로 보유자, 디지털자산 이동, 증명 등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기업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솔루션은 해피티콘이 될 수 있다. 코인방식은 ERC 20을 활용한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해피티콘의 총 발행량은 1억개 정도가 될 수 있다.

【0079】 가령, 회사는 상법상 문제가 없도록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의결을 할 수 있고, 순수 배당만을 위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소유자들에게 대한 배당 방법은 매년 결산에서 집계되는 순이익에 대해 1/N로 지급하되, 현금 또는 디지털자산 지급 방안 중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주주

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수(규모)만큼 1차 배당을 받고 추가되는 자산에 따라 2차, 3차, 4차로 계속 확장되는 배당을 받게 되며, 이때는 일반적인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업종별 사업별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구조의 사업은 한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자산 중 체도권으로부터 인정받은 현금 또는 신용 담보력 내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으로만 신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탁화된 안전한 디지털자산은 초기 발행량이 제한되고 더 이상을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신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업 내에서 배당구조로써의 신사업 확장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회사의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은 사업 확장시마다 기업의 자산가치가 늘어나고 배당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한 개의 디지털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이에 비례해 갈수록 늘어나는 증식형 배당을 받게 된다.

【0081】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제도를 도입한 투명한 회계구조이고, 블록체인이 갖는 특성상 모든 디지털자산 소유자들에게 낱낱이 회계정보가 공개되는 공공거래장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회계구조를 갖게 돼 회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에 준하여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양만큼 정확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0083】 가령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존 능력이 확실해야 하고(외부 해킹이나 오염방지) 서로 자산을 교환할 때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보존 능력에 대하여 하드웨어 지갑방식의 신탁방식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보관시키며, 분실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복원시킬 수 있다. 단, 탈취해간 디지털 자산은 은행의 횡선수표 처럼 일정기간 지갑이동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진위여부를 밝힌 후에 자동 또는 회수된다. 도 3에서는 해피티콘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으로 신탁을 요청하고, 또 자산관리계약 등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 즉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의 운영자는 사용자의 지갑에 접근하지 않는다. 캠페인에서 고유 지갑에 지급된 해피티콘은 계약(contract)에 의해 자동 통제된다. 자금 모금이 완료된 후 모든 자금은 신탁사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운영된다. 오직 계좌 소유주만이 자신의 (온라인)지갑에 접근할 수 있다. 빠른 로그인을 위해 해싱(유형, 방법) 및 계좌 비밀번호는 사이트에 저장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플랫폼상 자신의 지갑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삭제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SNS 프로필, 이메일, 그리고 다른 연락처에 대한 링크는 계정 소유자에게만 보이며, 다른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0085】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슈(혹은 트랜잭션) 즉 기업자산의 디지털자산화가 발생하면, 해피티콘(HPTC)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디앱(Dapp)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홀더(holder) 즉 소유주에게 판매된다(증명 포함). 도

4에서 3rd 파티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복수의 노드, 가령 서비스와 같은 장치를 의미할 수 있다. 물론 복수의 노드는 금융기관 등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0087】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의 운영자 또는 운영사(A사, 가령 (주)NCCA)는 다양한 사업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디지털화를 진행할 자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증식형 배당구조를 가진 코인 해피티콘을 발행한다. 가령, 자산디지털화를 위한 예상 자산은 해운대 마리나시설, 해운대 선형호텔 등 다수라고 가정해 보자. 기 준공된 자산의 인수나 향후 예정된 사업 진행을 위해 멤버십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모집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투자 또는 새로운 코인의 확보를 원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0089】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은 초기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자금이전 등의 활용을 위해 코인을 보유하였으나 현재는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에 따라 신규 코인의 확보와 다양한 투자를 위한 코인의 활용처를 찾고 있는 추세로, 새로운 형태의 이슈가 만들어지는 블록체인사업에 대하여는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할수 있다. 회원모집을 통해 마련된 사업비는 회원을 위한 부대시설로써 자산인수나 향후 자산건립에 한하여만 사용된다. A사는 준공된 자산인수와 자금이 투여되어 완공될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치에 준하여 해피

티콘을 발행한다. 발행된 해피티콘은 그 중 20%를 회원에게 기프트(GIFT)로 지급하며 이는 회원가입비의 30% 금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80%는 회사 보유분이다. 해피티콘은 순수배당형 코인이며 초기 발행한 양으로 고정되어 추가 발행은 없다. A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주식도 신탁사에 맡기며, 발행한 코인 역시 미국정부가 처음으로 허용한 가상화폐 신탁사(PRIME TRUST)에 디지털자산신탁계약을 통해 보관된다. 따라서 회원가입비로 지급된 모든 코인이 사업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A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GIFT로 지급된 해피티콘의 보유지분만큼 회사자산운영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회사는 보유한 80%의 코인을 회원을 위한 새로운 자산인수 및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되고 이 자산 역시 신탁사에 신탁되어, 회원은 늘어난 자산에 대한 사용권이 추가됨으로써 회원권리는 확대되고 또한 자산의 증가에 따른 수익도 증가함에 따라 배당구조도 확대되어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해피티콘은 1차 배당구조를 갖는 자산이 확보될 때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며 상장된 해피티콘은, 자산을 가치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만 발행한 STABLE 코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액면가는 보장되며, 자산가치의 증식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자산 가치가 증식함에 따라 배당수익도 늘어남으로 초기 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해피티콘을 보유한 회원은 코인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고 가입한 회원비의 회수도 가능해진다. 해피티콘을 보유한 회원은 카드사와의 협약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유한 가치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은 부대시설의 자유로

운 이용과 함께 해피티콘의 보유분만큼 운용수익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되며 전 세계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코인상장에 따라 코인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도 있다.

【0091】 자금 확보를 위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암호화폐)를 살펴보면, A사는 자산을 담보로 한 증식형 배당코인인 해피티콘의 발행과는 별개로 회사자체의 가치평가를 통한 토큰을 발행한다. 100억의 운영자금을 목표로 발행되는 토큰 역시 거래소에 상장되며 상장 후 적정비율로 디지털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개발의 최고 노하우를 가진 블록체인보안협동조합(이사장 B)과의 개발계약에 준하여 코인과 토큰이 발행되고 거래소 상장작업을 진행한다. 토큰 발행은 자산가치평가와 신탁계약이 진행됨과 동시에 초기에 실시하여 회사의 안정적 운용비를 확보하게 된다.

【0093】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STO의 단계를 넘어 증식형 배당구조를 가진 코인의 발행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며 자산이 편드화되어 블록체인 기반화에 디지털자산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블록체인 산업에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 등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유동화가 가능하며 A사는 사업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가치평가에 대한 액면가가 보장되는 안정된 코인을 발행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벤처기업 등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생태계를 지향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확장추세에 있다. 대세는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블록체인 사업의 참가자가 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의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 발행된다면 그 성공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이슈화되며 자금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자산증식형 배당구조를 가진 블록체인 사업에의 참가자는 블록체인 사업의 선구자적 지위를 갖게 되며 그만큼 폭발성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0095】 한편, 도 1의 평가기관장치(140)는 권위있는 기업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 컴퓨터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와 연동한다. 평가기관장치(140)는 개인의 부동산이나 기업의 자산, 그림이나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평가 데이터를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로 제공한다.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0097】 또한, 거래소장치(150)는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를 통해 발행된 자산을 코인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가령, 코인은 화폐의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주식거래와 다르게, 본 발명의

실시예는 개인의 자산(예: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0099】 도 5는 도 1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0101】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제어부(510), 디지털자산관리부(520) 및 저장부(53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0103】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저장부(53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구성되거나, 디지털자산관리부(52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제어부(510)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0105】 통신 인터페이스부(500)는 도 1의 통신망(120)을 경유하여 제1 단말장치(100), 제2 단말장치(110), 평가기관장치(140) 및 거래소장치(150)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신 인터페이스부(500)는 변/복조, 맥싱/디맥싱, 인코딩/디코딩, 암호화/복호화 및 스케일링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이는 당업자에게 자명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0107】 통신 인터페이스부(500)는 제1 단말장치(100)와 통신을 수행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자산화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디지털자산화하여 발행된 코인은 거래소장치(150)를 통해 제2 단말장치(110)의 사용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의 과정에서 통신 인터페이스부(500)는 자산에 대한 코인 발행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기관장치(140)에서 제공해 DB(130a)에 저장해 둔 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코인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평가 과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 단말장치(100)와 통신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0109】 또한, 제어부(510)는 도 5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를 구성하는 도 5의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디지털자산관리부(520) 및 저장부(530)의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510)는 디지털자산관리부(520)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자산과 관련하여 평가 데이터를 도 1의 DB(130a)로부터 가져와 저장부(530)에 임시 저장한 후,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0111】 또한, 제어부(510)는 디지털자산관리부(520)의 요청에 따라 자산 평가를 통해 평가된 후 그에 상응하여 발행된 코인을 도 1의 거래소장치(150)로 제공하도록 요청하면, 이에 근거해 통신 인터페이스부(500)를 제어하여 거래소장치(150)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0113】 나아가, 제어부(510)는 자산 변동이 발생하게 될 때,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DB(130a)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변동과 관련하여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면, 연동하는 평가기관장치(140)나 거래소장치(150)와, 물론 기타 다른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장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해당 장치 즉 노드(node)들과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어부(510)는 자산에 대한 코인이 발생되면 해당 데이터를 도 1의 DB(130a)에 저장시킴과 동시에 위의 장치들에도 전송하여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할 수 있다.

【0115】 디지털자산관리부(520)는 블록체인을 통한 기업자산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기업자산과 디지털자산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자를 위하여 디지털자산관리부(520)는 간단하게 디앱 방식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 단순히 블록체인 디지털화가 아닌 P2P 매매시스템 및 거래소 상장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

통 기업도 쉽게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자산화가 가능하게 한다. 물론 코인 발생시, 자산과 관련해 평가기관의 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0117】 또한,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이슈 즉 기업자산의 디지털자산화라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블록체인을 통한 디앱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소유자에게 판매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즉 코인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드웨어 지갑방식의 신탁방식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분실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복원시키며, 탈취된 디지털 자산은 수표처럼 일정기간 지갑이동이 자동 중단되며, 진위 여부를 밝힌 후 자동 소각 또는 회수를 하게 된다.

【0119】 나아가, 디지털자산관리부(520)는 디지털자산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에게 수익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배당의 결정은 회사의 경우 회사 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배당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이의 경우에도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된다. 가령 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되면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므로 배당은 증식형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0120】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관리부(520)는 도 1의 제2 단말장치(110)의 사용자 즉 디지털자산의 소유자들로부터 회계정보의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공거

래장부 등의 형태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관리부(520)는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근거로 회계장부를 자동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0122】 저장부(530)는 제어부(510)의 제어 하에 처리되는 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510)의 요청시 저장된 정보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부(530)는 제1 단말장치(100)로부터 코인 발행을 위한 자산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제어부(510)의 제어 하에 임시 저장한 후, 출력하여 디지털 자산관리부(520)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0124】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5의 제어부(510)는 CPU와 메모리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으며, CPU와 메모리는 원칩화하여 형성될 수 있다. CPU는 제어회로, 연산부(ALU), 명령어해석부 및 레지스트리 등을 포함하며, 메모리는 램(RAM)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회로는 제어동작을, 연산부는 2진 비트정보의 연산을, 그리고 명령어해석부는 컴파일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고급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거나 기계어를 고급언어로 변환하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레지스트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저장에 관여할 수 있다.

【0126】 상기의 구성 결과, 가령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의 초기 구동시 CPU는 도 5의 디지털자산관리부(520)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메

모리에 로딩한 후 이를 실행시킴으로써 데이터 연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0128】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0130】 설명의 편의상 도 6을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기업 또는 개인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수신한다(S600). 물론 기업 관계자나 개인의 단말장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디앱 방식으로 간단하게 관련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은 개인이나 회사의 부동산이나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관계자가 개인이 제공하는 제공한 자산의 희망 가치, 1개 토큰당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0132】 또한,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하여 코인으로 발행하고, 발생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에 따라 코인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와 연동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한다(S610).

【0134】 다시 말해,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디지털자산 즉 코인을 발행하고, 또 자산의 잔여분에 대하여도 코인을 발행한 경우 디지털자산 으로부터 자산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산 변동이 발생할 때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여 데이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장부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5억에 달하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개인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코인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즉 50%에 대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이후, 잔여 50%에 대하여 추가로 디지털화를 요청하는 경우, 전체 100%로 디지털화된 것이므로, 이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장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0136】 그리고,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해당 코인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회계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해당 정보 즉 공공거래 장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0138】 상기한 내용 이외에도 도 1의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130)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동작과 관련해서는 앞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0140】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비일시적 저장매체(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현할 수 있다.

【0142】 여기서 비일시적 판독 가능 기록매체란, 레지스터, 캐시(cache),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기기에 의해 판독(reading)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CD, DVD, 하드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 USB, 메모리 카드, ROM 등과 같은 비일시적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제공될 수 있다.

【0144】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146】 100: 제1 단말장치	110: 제2 단말장치
120: 통신망	130: 디지털자산화서비스장치
140: 평가기관장치	150: 거래소장치
500: 통신 인터페이스부	510: 제어부
520: 디지털자산관리부	530: 저장부

【청구범위】

【청구항 1】

기업 또는 개인의 실물 자산(real asset)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코인(coin)으로 발행하고, 상기 발행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에 따라 코인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상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node)와 연동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복수의 외부장치와 각각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발행한 코인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자산관리기관,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기관과 자산관리계약, 자산보관계약 및 사무수탁계약을 각각 수행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개인 또는 기업의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로서 변환할 자산, 희망가치액, 토큰당 가격, 토큰명 및 발행기관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변환할 자산으로서 개인의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코인 발생시 상기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변환할 자산 중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현금 또는 신용 담보력 내에서 상기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회계정보를 거래장부의 형태로 생성해 상기 코인의 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7】

통신 인터페이스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의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에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부가, 상기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실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고, 상기 발행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에 따라 코인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상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와 연동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복수의 외부장치와 각각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발행한 코인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자산관리기관,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기관과 자산관리계약, 자산보관계

약 및 사무수탁계약을 각각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개인 또는 기업의 단말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상기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로서 변환할 자산, 희망가치액, 토큰당 가격, 토큰명 및 발행기관 관련 정보를 근거로 상기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변환할 자산으로서 개인의 부동산 또는 무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하는 단계는,

상기 코인 발생시 상기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변환할 자산 중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현금 또는 신용 담보력 내에서 상기 코인을 발행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회계정보를 거래장부의 형태로 생성해 상기 코인의 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방법.

【요약서】**【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운용방법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자산화 서비스 시스템은, 기업 또는 개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및 수신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 및 평가기관의 자산평가 데이터를 근거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고, 발행한 코인을 복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자산 가치의 변경시 구매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며, 코인의 발행 사실 변경시 복수의 노드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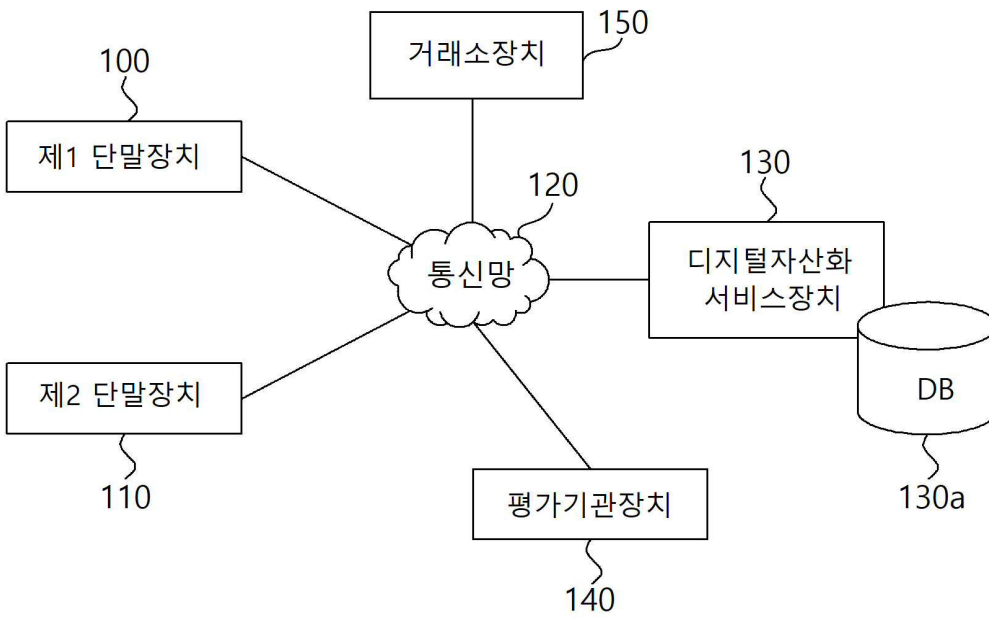
【대표도】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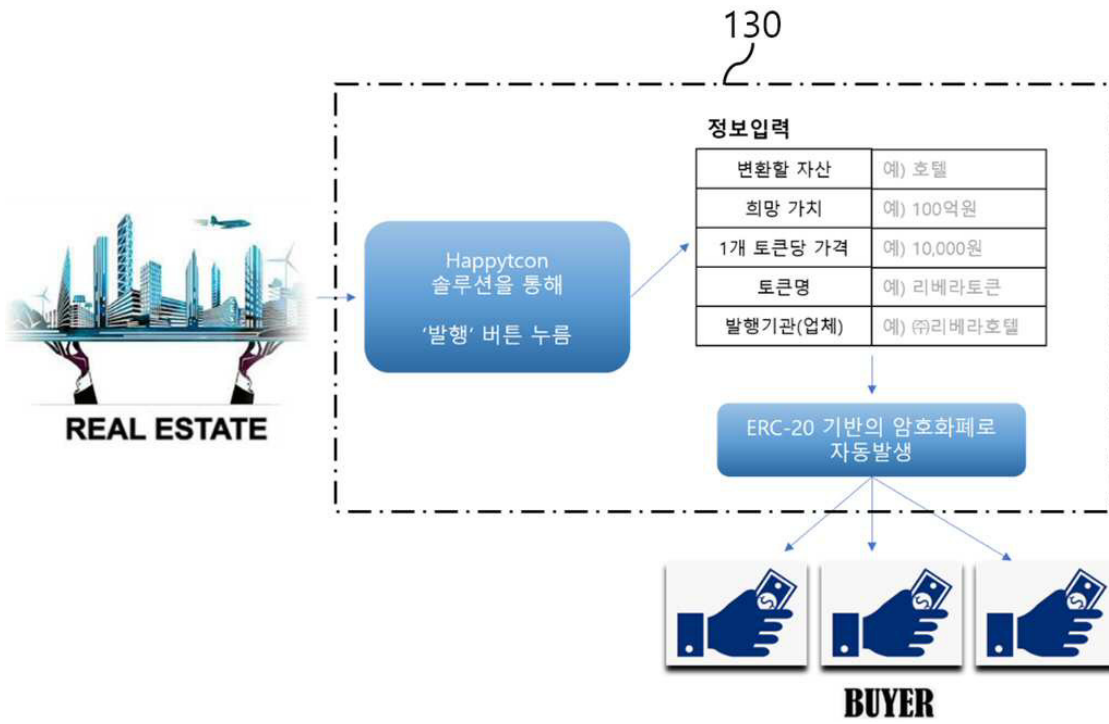
【도면】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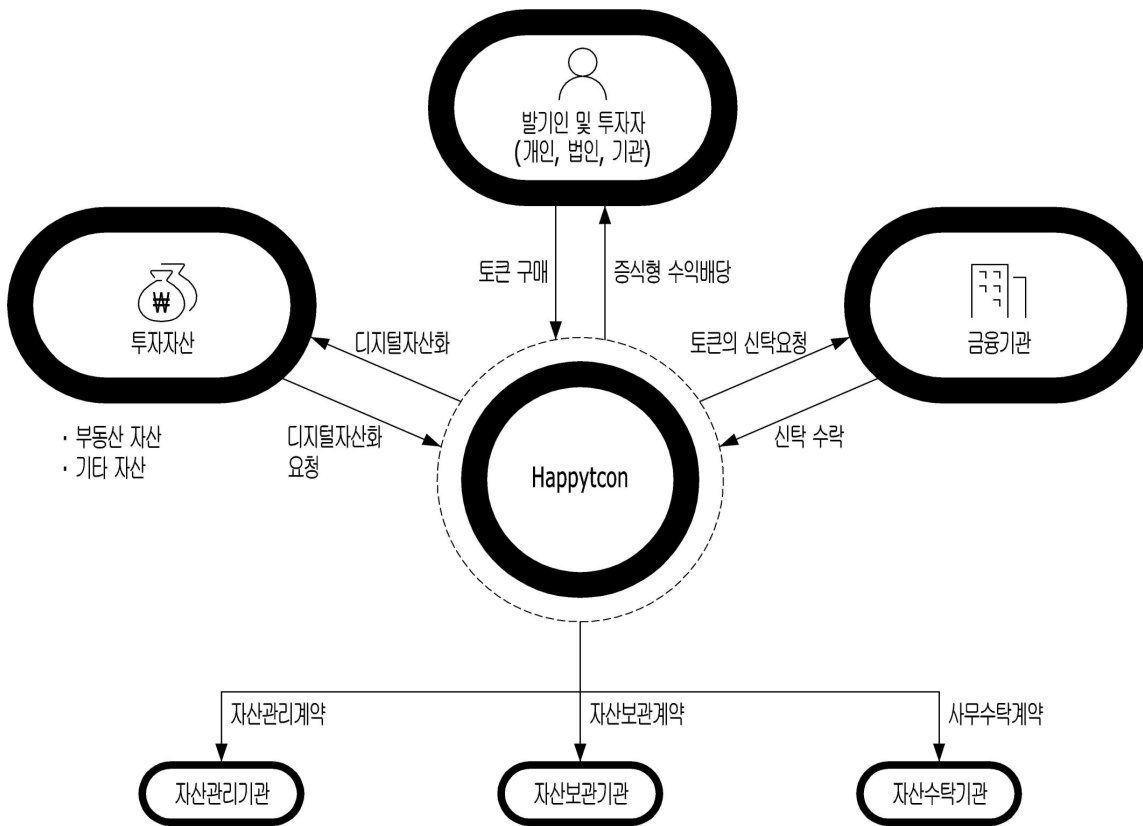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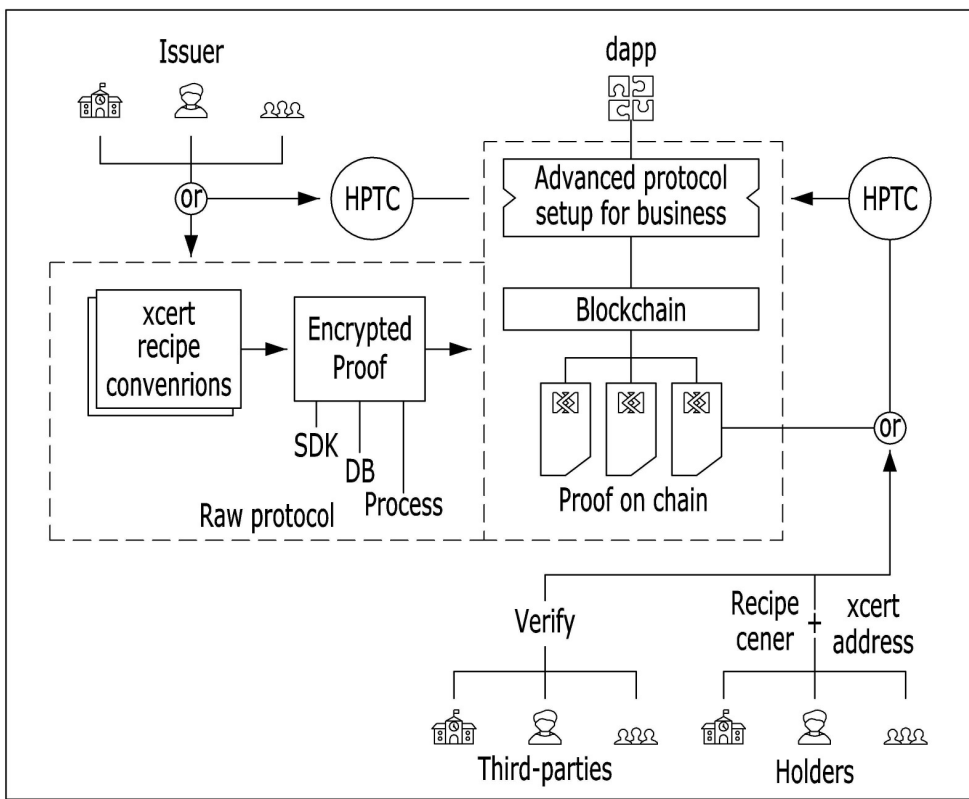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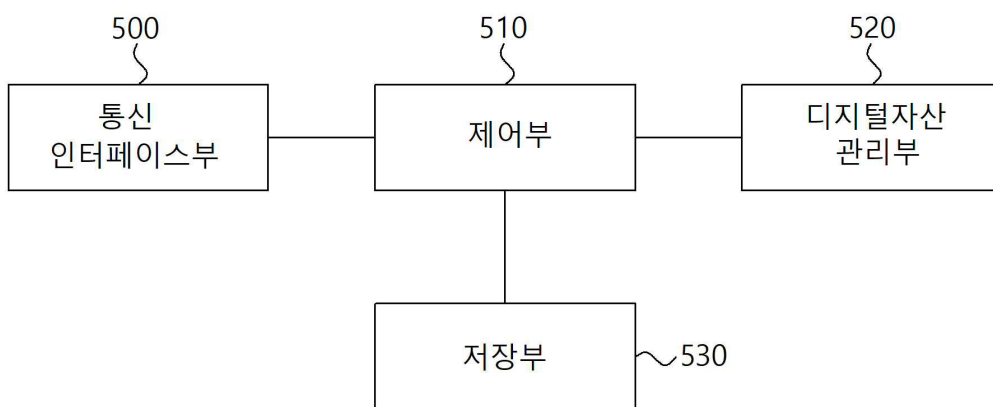
【도 3】



【도 4】



【도 5】



【도 6】

